

2020년 전라남도 일반직공무원(지방보건연구사)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2020년 전라남도 일반직공무원(지방보건연구사)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14일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예정분야	직급	직렬(직류)	선발예정인원	근무예정부서
감염병 진단 검사	연구사	보건연구 (공중보건)	2명	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

2. 임용대상 직무내용

임용예정분야	담당업무
감염병 진단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신종 감염병 진단 검사정부 주관 감시 사업 수행법정 감염병 진단 검사관련 시책·연구사업 수행

3. 근거법령

- 가.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6884호, 2020. 1. 29.)
- 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9869호, 2020. 1. 1.)
- 다.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0027호, 2019. 8. 6.)
- 라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, 2019.12.26.)
- 마.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전라남도 규칙 제3191호, 2019. 5. 2.)

4. 응시자격(판단기준일: 최종시험예정일)

가. 공통사항 (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○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나. 응시자격 요건

임용예정분야 (근무부서)	자 격 요 건
감염병 진단검사 (보건환경연구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감염병 진단검사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련학과 : 생명공학(과학), 생물학, 미생물학, 수의학, 의학, 유전공학 전공자 ▶ 관련분야 : 감염병 진단 검사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【우대요건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기관 감염병 진단 검사 분야 근무 경력자 2. 감염병 진단 검사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논문 실적 </div>

< 공 통 >

- 학위 취득 여부 및 실무경력 산정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(2021.1.21.) 기준으로 판단함
-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< 학 위 >

*** 반드시 자격요건의 관련학과 전공자만 자격 충족**

- 관련학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(붙임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증명서에 「우리 대학원의 ○○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전라남도 지방보건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(2020. 12. 14.)에 게재된 ○○학과와 동일학과임을 증명합니다.」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< 우대요건 >

▶ 국가기관 감염병 진단 검사 분야 근무경력(최대 5년,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)

-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,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단,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
 - ※ 예시)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인 경우: 2년 우대(3년-1년)
- 대학 조교 경력과 석·박사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, 국·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연구경력은 포함(강의경력은 제외)
-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
 - 전임(상근, 주40시간 근무)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
 -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

▶ 감염병 진단 검사 분야 논문 실적(최대 3건, 건별 차등 우대) - 최근 3년간 실적

- 인정대상: 연구논문, 석·박사학위논문, 학술등재지 논문

5. 임용예정일,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

- 임용예정일 : 2021. 1월중(예정) ※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채용기간 :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을 적용함
- 보수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지급

6. 시험방법 및 일정

가. 시험방법

- 1차 시험: 서류전형
 -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 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- ▶ (서류전형기준)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, 우대요건(관련 분야 근무경력, 논문실적) 등
 - ※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
- 2차 시험: 면접시험
 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 - ▶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- ▶ (평정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 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('상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)

【 불합격 기준 】

-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'하' 평정
- ② 위원 1/3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 평정

나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합격자발표
'20. 12. 14.(월)	'20. 12. 28.(월) ~ 12. 30.(수)	서류전형	'21. 1. 12.(화)	'21. 1. 15.(금)
		면접시험	'21. 1. 21.(목)	'21. 1. 26.(화)

- ※ 합격자 발표: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/>)에 게시
- ※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(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)

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: 별지1~9호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 수 처: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행정동 8층)

다. 접수방법: 등기우편 제출

※ 코로나-19 예방을 위해 도청출입이 가급적 제한되오니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- 우)58564,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(전라남도청) 총무과 인재채용팀
- ※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'감염병 진단 검사 응시원서 재증' 표기
- 우편 접수자의 경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"응시표"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우편접수 시, 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는 제출서류와 동봉

8. 응시자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제출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② 응시원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(응시수수료: 7,000원)
 - ※ 응시수수료는 **전라남도 수입증지**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시는 **우편통상환**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(**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**)
- ③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 -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
 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- ④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- 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- ⑥ 최종학교 학위증서(또는 졸업증명서) 1부
 - 박사학위의 경우, 석·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 - 석사학위의 경우,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- 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우대요건 포함)
 - 근무기간(연·월·일)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,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
 -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**“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6호 서식)”** 추가 제출
 -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
 -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(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)
 - ※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‘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’ 및 ‘폐업사실증명서’로 갈음하되, 경력증명서의 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이 어려우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
 - ※ 이 경우, 채용분야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

⑧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(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자)

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필수)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
⑨ 주민등록표 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 발행)

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 1부

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 1부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①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논문 요약서(별지 제9호 서식)
- 논문의 경우 표지, 제목,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

《응시자 유의사항》

-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(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)을 인정하며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
-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⑥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성적, 운전면허, 표창장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

9. 기타 사항

- 가.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.
- 라. 서류에 기재된 내용(학력,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 - 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
- 사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자.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.

- 차.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카.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시행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.
- 타.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4년간 전출이 제한되며, 동 기간 이후 임용 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출이 가능합니다.
- 파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: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)

▶ 담당직무 관련 문의

임 용 분 야	담 당 부 서	연 락 처
감염병 진단 검사	보건환경연구원	061-240-5231

참고

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감염병 진단 검사	지방보건연구사	2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보건환경연구원	감염병조사1과, 감염병조사2과

주요업무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종 감염병 진단 검사 ○ 법정 감염병 진단 검사 ○ 정부 주관 감시 사업 수행 ○ 생물안전 3등급(BL3) 시설 운영 ○ 관련 시책·연구사업 수행 등

필요역량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
필요지식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생물 검사 관련 전문지식 ○ 감염병 진단 기술 분야 전문지식

		관련분야 : 감염병 진단 검사
응시자격요건	학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감염병 진단검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학과 인정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명공학(과학), 생물학, 미생물학, 수의학, 의학, 유전공학 전공자 ▶ 관련분야 실무경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 진단 검사
	우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기관 감염병 진단 검사 분야 근무 경력자 ○ 감염병 진단 검사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논문 실적